당 진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275호 2022. 09. 15.(목)

규 칙

◦ 제322호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

훈 령

◦ 제126호 당진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9

고 시

◦ 제2022-184호 도로명주소 고시…… 21

◦ 제2022-185호 보호수 지정 고시(정정)…… 32

◦ 제2022-189호 도로명주소 고시…… 33

◦ 제2022-19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봉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

◦ 제2022-193호 도로명주소 고시…… 39

회 람						

발행 **당 진 시** (편집 홍보협력담당관 ☎ 350-3146)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 진 시 장 오 성 환

2022년 9월 15일

당진시 규칙 제322호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

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2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 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삭 제>

5.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0.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11.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재배치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조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삭 제>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삭 제>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	<삭 제>	

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	<삭 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삭 제>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적 접촉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 전가(轉嫁)----------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단체에 공무원 ----------
<신 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 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

	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 제4호 각 목의 ---------- 단체----------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	<삭 제>

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	

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당진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당 진 시 장 오 성 환

2022년 9월 15일

당진시 훈령 제126호

당진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당진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를 “「당진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 수수료 규격봉투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당진시 고시 제2022-18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9.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당산길 76-37 외 7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로 133 외 1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상구실로 214 외 87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폐지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8. 29.「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8/29〉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우강면 송산리 551-5	우강면 당산길 76-37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우강면의 당산 명칭 활용
2	순성면 성북리 647-1	순성면 버들길 111-8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회교원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대호지면 마중리 246-1	대호지면 새마실로 211-24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새마실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정미면 봉생리 333	정미면 상구실로 216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상구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신평면 금천리 113-74	신평면 원머리로 140-21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원머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석문면 초락도리 812	석문면 대호로 1344-15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대호만을 지나는 도로
7	송악읍 기지시리 153-79	송악읍 반촌로 86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8	정미면 천의리 502-2	정미면 독골길 50-13	2022-08-29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독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 8/29〉

NO	지번주소(토지지번)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자	건물번호 변경사유
		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1	용연동 668-2	용연로 133	용연로 133-1	2022-08-29	건물번호 변경(분할)신청
2	합덕읍 운산리 291-142	합덕읍 덕평로 570-2	합덕읍 덕평로 568	2022-08-29	건물번호 변경(분할)요청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8/29 〉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정미면 봉생리 333	정미면 상구실로 214	2022-08-29	건물멸실	
2	우강면 송산리 551-5	우강면 당산길 76-35	2022-08-29	건물멸실	
3	송산면 도문리 58-3	송산면 도문로 203-3	2022-08-29	건물멸실	
4	구룡동 667-2	원구룡길 5-10	2022-08-29	건물멸실	
5	송악읍 봉교리 92-4	송악읍 봉학로 349-5	2022-08-29	건물멸실	
6	고대면 용두리 685-5	고대면 고대로 15	2022-08-29	건물멸실	
7	고대면 용두리 644-14	고대면 고대로 13	2022-08-29	건물멸실	
8	고대면 장항리 205-1	고대면 연동로 421	2022-08-29	건물멸실	
9	고대면 옥현리 459-2	고대면 삼포길 318-55	2022-08-29	건물멸실	
10	고대면 슬항리 604-2	고대면 동산재길 57-7	2022-08-29	건물멸실	
11	송악읍 고대리 165-42	송악읍 안섬길 77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2	송악읍 중흥리 388-9	송악읍 중흥2길 14-32	2022-08-29	건물멸실	
13	석문면 삼봉리 810	석문면 대호만로 1659-13	2022-08-29	건물멸실	
14	송악읍 전대리 793	송악읍 신평로 1166-4	2022-08-29	건물멸실	
15	송악읍 금곡리 55-6	송악읍 신평로 1297-14	2022-08-29	건물멸실	
16	신평면 거산리 594	신평면 독암길 44-7	2022-08-29	건물멸실	
17	고대면 장항리 385-8	고대면 원장항길 36	2022-08-29	건물멸실	
18	송악읍 도원리 162-16	송악읍 황새골길 15-41	2022-08-29	건물멸실	
19	합덕읍 점원리 18-1	합덕읍 비방구지길 27	2022-08-29	건물멸실	
20	순성면 중방리 산76-2	순성면 향목동길 86	2022-08-29	건물멸실	
21	정미면 봉성리 256-1	정미면 염솔로 573	2022-08-29	건물멸실	
22	정미면 매방리 374-1	정미면 매방리길 31-3	2022-08-29	건물멸실	
23	정미면 우산리 221-7	정미면 회천로 495-1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24	석문면 통정리 738-3	석문면 통정3안길 8-25	2022-08-29	건물멸실	
25	면천면 성상리 809-2	면천면 군자길 11-1	2022-08-29	건물멸실	
26	면천면 성상리 813-6	면천면 동문1길 12-9	2022-08-29	건물멸실	
27	합덕읍 운산리 615	합덕읍 남부로 1791-7	2022-08-29	건물멸실	
28	합덕읍 운산리 7	합덕읍 덕역말길 38-4	2022-08-29	건물멸실	
29	석문면 삼봉리 560-2	석문면 서낭당길 30-4	2022-08-29	건물멸실	
30	면천면 성상리 804-11	면천면 군자길 13-1	2022-08-29	건물멸실	
31	순성면 봉소리 1080	순성면 구절로 109-10	2022-08-29	건물멸실	
32	순성면 봉소리 175-4	순성면 매실로 507-15	2022-08-29	건물멸실	
33	합덕읍 신흥리 138-8	합덕읍 상동2길 31-11	2022-08-29	건물멸실	
34	송악읍 한진리 76-27	송악읍 한진포구길 39-88	2022-08-29	건물멸실	
35	석문면 통정리 44-1	석문면 통정1길 143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36	석문면 장고항리 851-14	석문면 용무치길 17-16	2022-08-29	건물멸실	
37	대호지면 도이리 산38-10	대호지면 충장로 677	2022-08-29	건물멸실	
38	대호지면 조금리 358-1	대호지면 4.4만세로 31-18	2022-08-29	건물멸실	
39	고대면 대촌리 433	고대면 큰말선길 77	2022-08-29	건물멸실	
40	고대면 용두리 587	고대면 보덕포로 217-30	2022-08-29	건물멸실	
41	면천면 문봉리 526	면천면 한천길 19	2022-08-29	건물멸실	
42	면천면 죽동리 355-1	면천면 아미로 354-35	2022-08-29	건물멸실	
43	순성면 중방리 96-3	순성면 덕평로 1037	2022-08-29	건물멸실	
44	순성면 봉소리 621-40	순성면 순성로 371	2022-08-29	건물멸실	
45	정미면 대운산리 524	정미면 구울미길 38-2	2022-08-29	건물멸실	
46	송악읍 반촌리 617-33	송악읍 틀모시로 526	2022-08-29	건물멸실	
47	송악읍 반촌리 617-33	송악읍 틀모시로 528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48	송악읍 반촌리 835-2	송악읍 반촌로 155-7	2022-08-29	건물멸실	
49	송악읍 가학리 461	송악읍 연방축길 62-22	2022-08-29	건물멸실	
50	송악읍 가학리 460-3	송악읍 연방축길 62-17	2022-08-29	건물멸실	
51	송악읍 가학리 489-1	송악읍 도고머리길 91	2022-08-29	건물멸실	
52	송악읍 가학리 489-1	송악읍 도고머리길 95	2022-08-29	건물멸실	
53	송악읍 가학리 389-1	송악읍 도고머리길 99	2022-08-29	건물멸실	
54	고대면 당진포리 236-20	고대면 고대로 865-10	2022-08-29	건물멸실	
55	원당동 359	정안로 103	2022-08-29	건물멸실	
56	고대면 당진포리 2-58	고대면 탕주막길 116-11	2022-08-29	건물멸실	
57	순성면 백석리 606	순성면 백양길 38-6	2022-08-29	건물멸실	
58	고대면 진관리 246-19	고대면 항곡로 298	2022-08-29	건물멸실	
59	송산면 송석리 285	송산면 잿말길 34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60	채운동 188	남부로 113-16	2022-08-29	건물멸실	
61	순성면 아찬리 179-46	순성면 상오로 65	2022-08-29	건물멸실	
62	신평면 매산리 253	신평면 샛터길 6	2022-08-29	건물멸실	
63	순성면 봉소리 621-7	순성면 순성로 367-1	2022-08-29	건물멸실	
64	신평면 부수리 산1-1	신평면 맷돌포길 46	2022-08-29	건물멸실	
65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4	2022-08-29	건물멸실	
66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2-1	2022-08-29	건물멸실	
67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2	2022-08-29	건물멸실	
68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기지시2길 2-5	2022-08-29	건물멸실	
69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기지시2길 2-7	2022-08-29	건물멸실	
70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기지시2길 2-9	2022-08-29	건물멸실	
71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6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72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5	2022-08-29	건물멸실	
73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4	2022-08-29	건물멸실	
74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3	2022-08-29	건물멸실	
75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2	2022-08-29	건물멸실	
76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	2022-08-29	건물멸실	
77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90-1	2022-08-29	건물멸실	
78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8	2022-08-29	건물멸실	
79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8-1	2022-08-29	건물멸실	
80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6	2022-08-29	건물멸실	
81	송악읍 기지시리 324-2	송악읍 틀모시로 784	2022-08-29	건물멸실	
82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2-11	2022-08-29	건물멸실	
83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2-12	2022-08-29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84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2-14	2022-08-29	건물멸실	
85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2-16	2022-08-29	건물멸실	
86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틀모시로 782-18	2022-08-29	건물멸실	
87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기지시2길 2-11	2022-08-29	건물멸실	
88	송악읍 기지시리 323-1	송악읍 기지시2길 2-3	2022-08-29	건물멸실	

당진시 고시 제2022-185호

보호수 지정 고시(정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당 진 시 장

1. 공고명 : 보호수 지정 고시(정정)

2. 보호수 신규지정 예정 대상

지정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근원경 (cm)	지정사유
		당초	변경					
2021-1 (고대-7)	충남 고대면 항곡리 산46	모감주나무	무환자나무	1	350	18	94	희귀성, 특이성, 노거수
2021-2 (고대-8)	〃	모감주나무	무환자나무	1	180	16	62	〃

3. 보호수 지정 사유: 수종의 희귀성 및 특이성, 보전가치가 높은 노거수임.

4.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보호수 정정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041-350-4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고시 제2022-18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5.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원로 32-22 외 5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5.「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9/5>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순성면 나산리 544	순성면 남원로 32-22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남원천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	수청동 321	수청3로 43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20-04-14	법정동 명칭 활용
3	신평면 상오리 337-16	신평면 예전길 90-25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예전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고대면 항곡리 263-1	고대면 항곡3길 12-4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5	고대면 진관리 542-16	고대면 진관로 71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6	정미면 도산리 36-1	정미면 갈골로 160-66	2022-09-05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갈골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당진시 고시 제2022-19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봉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347-13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봉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봉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과 (☎041-350-44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9월 13일

당 진 시 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봉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함

붙임.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660	봉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충남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347-13번지 일원	-	69,166	당진군 고시 제2006-149호 (2006년 08월 04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60	봉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충남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347-13번지 일원	69,166	-	69,166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69,166	-	69,166	100.00	-	100.00	-
공업용지	41,234	증)460	41,694	59.6	증)0.6	60.2	-
유치업종용 공업용지	41,234	증)460	41,694	59.6	증)0.6	60.2	
녹지용지	27,932	감)460	27,472	40.4	감)0.6	39.8	-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업용지	○ 면적 변경 -41,234㎡ ⇒ 41,694㎡, 증) 46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업용지 증가
녹지용지	○ 면적 변경 -27,932㎡ ⇒ 27,472㎡, 감) 46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용지 감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변경

도면번호	기 정					변 경					변경사항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A-BL	41,234	A-1	봉생리 347-13번지	29,653	A-BL	41,234	A-1	봉생리 347-13번지	29,653	공업용지
				봉생리 223-14번지	11,481				봉생리 223-14번지	11,481	
				봉생리 223-17번지	0				봉생리 223-17번지	460	
합 계					41,234	합 계				41,694	증) 46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 A가구 : 41,234㎡ → 41,694㎡ [증) 460㎡] (토지이용계획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결정(안)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변경없음
		정미면 봉생리 347-13번지	용 도	허용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 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20m이하)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조색, 보조색 이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점	교 통 처 리 방 안
진 출 입 동 선	Ⓐ	•군도 17호선 상 사업지 진출입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진출입부 단순 접속도로로 운영(우회전 진출입) - 도류화계획 수립 - 차량회전반경 R=9m 이상 확보
	Ⓑ	•사업지 진출입로 차로운영방안 수립 - B=10.0m(양방향 2차로), B-B' 단면 참조
주차시설	-	•계획주차대수 : 40면 - 법정주차대수(30면) 대비 133.3% 확보 - 주차수요(원단위법, 35면) 대비 114.3% 확보 - 장애인주차시설 1면 설치(계획대수의 2.5%)
교통안전 및 기 타	-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 이격식 : B=6.0m, L=394m(1-3방식) •표지병 설치 - 군도 17호선 사업지 전면구간 •서행표지판 설치(4개소) •이중 굽은 도로표지판 설치(4개소)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당진시 고시 제2022-19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3.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옥현길 62-28 외 3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9. 13.「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9/13>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고대면 옥현리 259-29	고대면 고대옥현길 62-28	2022-09-13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2	합덕읍 석우리 1216	합덕읍 인더스파크로 20	2022-09-13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7-08-10	인더스파크 단지 조성
3	정미면 대운산리 96-7	정미면 대방들길 165	2022-09-13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대방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송악읍 봉교리 336-141	송악읍 상중말1길 9	2022-09-13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	2022-03-03	자연마을명칭인 상중말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